



Dictionary

지식재산권 용어사전

■ 파리협약

1883. 3.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. 그 후 7차례(1900년 브뤼셀, 1911년 워싱턴, 1925년 헤이그, 1934년 런던, 1958년 리스본, 1967년 스톡홀름, 1979년) 걸쳐 개정. 각각의 개정협약은 독립적이며 어느 단계까지를 비준하고 어떤 개정협약에 가맹할 것인가는 각 동맹국의 자유이다. 따라서 파리협약은 스톡홀름 개정까지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협약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의 종전의 협약은 계속 존속한다. 다만, 새로이 가입하는 국가는 가장 최근의 협약이 적용된다. 우리나라는 1980. 5. 4 가입.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, 우선권제도,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.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표, 서비스마크, 상호, 원산지표시, 부정경쟁방지,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■ 특허협력조약

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, 1970. 6월 워싱턴에서 조인, 1978. 1. 24에 발효. 우리나라는 1984. 5. 15 가입.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,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.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, 국제조사제도, 국제예비심사제도,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. 발명자가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할 때에는 법규, 절차 및 언어가 다른 각 국가별로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동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잇점이 있다.

■ 특허취소결정

특허이의신청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에 대한 취소결정이 행해진다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